

에너지 利用合理化法

編 輯 委 員 會

1. 概要

에너지의 重要性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世界各國에서 날이 갈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73年을 계기로 限定된 火石에너지를 조금이라도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위한 方案을 技術의 次元에서는 물론 法的 規制에 의해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74年初에 热에너지의 有效한 利用을 目的으로 한 热管理法을 制定하여 使用하여 왔다. 이 热管理法은 시장상의 利點을 위하여 1975年 原動機團束法을 吸收 統合하여 改正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1979年的 定期國會에서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이 새로 制定되어 法律 第3181號로 作年 末 公布되어 1980年 7月부터는 施行될 예정이므로 現在의 热管理法은 폐지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利用合理化法을 새로 制定하게 된 동기는 現行 热管理法이 産業部間에서 一定量 以上的 燃料 및 热만을 管理對象으로 하고 이의 規制를 行政的인 方法만으로 함으로서 綜合的인 에너지의 合理的인 利用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管理의 對象을 産業部間뿐 아니라 住宅, 輪送 등 國民經濟 및 生活 전반에 걸쳐 必要한 行政的 規制를 할 수 있고 또한 金融稅制上의 支援 등에 의한 誘引策을 併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管理對象에너지에 燃料 및 热뿐 아니라 電氣를 포함시켜 에너지 全般에 걸쳐 對象을 확대시켰다.

2. 主要內容

(註: 主要內容은 “热管理 4권 43호, 1979년 12월”的 解説을 인용한 것이다.)

이 法의 主要內容을 간추려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法의 管理對象인 에너지에 燃料 및 热外에 電氣를 추가하므로 管理 대상을 확대한다.

(2)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特定한 에너지使用機資材는 公共試驗機關으로 하여금 그 製品의 에너지消費效率을 測定케 하고 廣告時에는 에너지消費效率을 표시토록 한다.

(3) 에너지管理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은 에너지利用合理化基本計劃을 수립하고 市・道別로 에너지消費節約目標를 설정・실시하게 한다.

(4) 動力資源部長官은 에너지需給上 부득이한 경우에 使用에너지의 轉換 및 사용할 에너지의指定 등 에너지 使用制限措置를 취할 수 있다.

(5) 一定規模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工場建設 등을 新築하거나 增築하고자 하는 자는 事前에 에너지 사용計劃을 動力資源部長官에게 신고토록 한다.

(6) 에너지節約型機資材를 製造하거나 設備施工을 하는 者에게는 金融稅制上의 支援 또는 补助金支給 기타 필요한 行政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7) 一定量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者를 에너지 管理對象者로 지정하고 에너지 管理를 담당할 에너지 管理士(热管理士 및 電氣管理士)를義務的으로 채용토록 하였고, 에너지 管理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指定 에너지 管理對象者에게 에너지管理診斷 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에너지 浪費要因을 是正토록 命할 수 있다.

(8) 建築物의 冷暖房設備, 温水設備, 換氣設

備等의 設置 및 運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建築物內의 冷暖房溫度에 관한 制限基準을 정하고 이 基準에 위반하는 者에게는 에너지의 供給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다.

(9) 動力資源部長官과 협의하여 車輛 기타 輸送手段에 대하여 單位燃料量에 대한 目標走行距離를 정할 수 있다.

(10) 热使用機資材의 製造業 許可와 그 製品의 型式承認, 施工業과 洗缶業의 指定 및 同機資材에 대한 性能에너지消費率, 安全度 등 각종 檢查를 받도록 한다.

(11) 大單位工場, 工業園地, 集團佳居地域등에서의 에너지 利用效率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集團 에너지 供給計劃을 수립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계획에 따른 热供給事業의 許可 및 热供給料金, 條件 등에 관한 規定의 認可, 기타 需用者保護를 위한 각종 規制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2) 政府의 出捐 其他 收入을 財源으로 에너지 利用合理化基金을 조성하여 에너지 節約型機資材의 研究・開發・生產 및 設置, 热併合發電, 集團에너지 供給施設의 設置 등 에너지 利用合理化事業에 대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3)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의 運營・管理 및 에너지 利用合理化에 관한 諸般事業을 担當推進하기 위하여 에너지 利用合理化에 관한 諸般事業을 担當推進하기 위하여 에너지 管理公團을 設立 運營토록 한다.

(14) 에너지 管理士의 資質向上과 에너지 管理의 效率發인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 管理士에 대하여 필요한 教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무단히 교육을 받지 아니한 者는 就業을 制限한다.

3. 에너지利用合理化法 (발췌)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 重要한 部分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第1章 総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에너지의 合理的인 이용을 도모하고, 热使用機資材의 效率提高 및 安全管理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热使用機資材로 인한 危害를 防止하고, 아울러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燃料・熱 및 電氣를 말한다.
2. “燃料”라 함은 原油・石油製品 可燃性天然ガス, 石炭・石炭製品(코오크스를 포함한다.) 및 기타 热을 발생하는 热源(核燃料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製品의 原料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에너지使用處”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工場・事業場 및 기타의 施設과 에너지를 轉換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 사용자”라 함은 에너지 使用處의 所有主(管理人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에너지 사용자”라 함은 热使用 機資材와 기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機資材를 말한다.
6. “热使用機資材”라 함은 热料 및 热을 사용하는 機器와 斷熱性資材로서 動力資源部 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策2章 エネルギー利用合理化基本施策

第4條(目標原單位) ① 動力資源部長은 에너지의 利用效率을 提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製品의 單位當 에너지 사용 目標量(이하 “目標原單位”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第6條(에너지消費效率표시 등) ① 動力資源部長은 에너지 利用合理化를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 使用機資材 중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機資材(이하 “에너지 效率表示機資材”라 한다)의 製造業者(輸入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 하여금 당해 에너지 效率

에너지 利用合理化法

表示機資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機關으로부터 에너지消費效率을 測定하고, 이를 당해 에너지效率表示機資材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第7條(에너지 사용등의 制限措置)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에너지需給上 不得已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하여 다음各號의 事項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令할 수 있다.

1. 使用에너지의 轉換 및 사용할 에너지의指定

2. 에너지 및 에너지 使用機資材의 사용

3. 에너지 消費를 助長하는 廣告行爲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에너지需給에 중대한支障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民生活의 安家을 도모하기 위하여 第10條 等 2項의 規定에 의한指定에너지 管理對象者에 對하여 第1項各號에 관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8條(에너지 使用計劃의 申告) ① 大統領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工場 또는 施設을 新設하거나 増設하고자 하는者は 미리 그 工場 또는 施設의 에너지 使用計劃를 動力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에너지 使用計劃의 内容, 申告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分으로 정한다.

第9條(稅制・金融上의 支援) 政府는 에너지이용合理화를 促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節約型施設投資・에너지節約型機資材의 製造・設置・施工 및 기타 에너지이용合理화에 관한 事業에 대하여는 金融・稅制上의 支援 또는 補助金의 支給 기타 필요한行政支援을 할 수 있다.

策3章 部門別 에너지管理

第10條(에너지管理對象者の 指定등) ① 에너지 사용者は 에너지 사용量이 大統領이 정하는 基準量 이상이 되는 때에는 다음各號

의 事項을 動力資源部分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年 1月 31日까지 動力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前年度의 에너지 사용量 및 製品生產量
- 당해 年度의 에너지 사용予定量 및 製品生產予定量

3. 에너지 사용 機資材의 現況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에너지 사용者 중에서 動力資源部分이 정하는 一定量(이하 “一定量”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者를 에너지管理對象者로 指定한다.

第11條(에너지 管理事項등) ① 指定에너지管理對象者는 에너지를 效率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事項에 관한 計劃을 作成하고 이를 實施하여야 한다.

1. 燃料의 選擇・運搬・貯藏・檢查 및 加의 適正化에 관한 事項

2. 燃料의 燃燒 및 다른 에너지로의 轉換의合理化에 관한 事項

3. 風化・自然發火 및 漏失으로 인한 燃料의 損失防止에 관한 事項

4. 加熱・冷却 및 傳熱의合理化에 관한 事項

5. 放射・傳導 및 抵抗등에 의한 熱의 損失防止 및 廢熱의回收에 관한 事項

6. 에너지 사용 機資材의 效率의in 에너지 사용 및 危害防止를 위한 適切한 保存管理와 改善에 관한 事項

7. 抵抗등에 의한 電氣의 損失防止에 관한 事項

8. 電氣의 動力・熱能으로의 變換의合理에 관한 事項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에너지管理의 適正化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에너지 사용者에게 第1項各號의 事項을 導할 수 있다.

第13條(에너지 管理士의 採用) ① 指定에너지管理對象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热管理 또는 電氣管
理에 관한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를 에너지管
理士(이하 “에너지 管理士”라 한다)로 採用
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管理士는 热管理士와 電氣管理士
로 區分한다.

第16條(建築物에 대한 에너지 管理基準)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에너지利用合理화를 위하여 建築物의 冷暖房設備·溫水設備·換氣設備 및 이에 關聯된 測定機器의 設置 및 運轉에 관한 基準을 정하여 이를 公告할 수 있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設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7條(冷暖房溫度의 制限基準等)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建築物에 대한 에너지利用 效率을 提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建築物 내의 冷暖房溫度에 관한 制限基準을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의 供給을 制限하게 할 수 있다.

第18條(目標走行距離의 公告)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車輛 기타 大統領이 정하는 輸送手段의 에너지利用效率을 提高하기 위하여 單位燃料量에 대한 目標走行距離를 정하여 이를 公告할 수 있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單位燃料量에 대한 目標走行距離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商工部長官 및 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4章 热使用機資材의 管理

第19條(热使用機資材의 製造業의 許可等) ① 热使用機資材의 製造業(이하 “製造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動力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그 許可받은 事項중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適合한 施設과 技術要員을 保有하여야 한다.

③ 貿易去來法에 의하여 輸出入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輸出入業者”라 한다)가 热使用機資材를 輸入하고자 할 때에도 第1項과 같다.

第24條(型式承認) ① 製告業者는 製告하고자 하는 热使用機資材의 型式에 관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热使用機資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27條(特定热使用機資材의 施工業의 指定등)

① 热使用機資材중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热使用機資材(이하 “特定热使用機資材”라 한다)의 設置·施工 또는 洗罐을 業(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動力資源部長官의 指定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業의 指定를 받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한 施設과 技術要員을 保有하여야 한다.

③ 特定热使用機資材의 製造業者는 그 特定热使用機資材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業의 指定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第2項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5章 集團에너지 供給

第38條(集團에너지 供給計劃)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에너지를合理的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號의 事項에 관한 計劃(이하 “集團에너지 供給計劃”이라 한다)을樹立하여 實施할 수 있다.

1. 工場·工業團地·大型建物 및 住居 地域

에너지 利用合理化法

등에서의 热併合發電 및 集團暖房에 관한
事項

2. 工業團地 및 發電所等의 產業發熱 이용
에 관한 事項.

3. 기타 集團에너지 供全計劃에 관한 事項.
② 動力資源部長官이 第 1 項의 集團에너지 供給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商工部長官・建設部長官 및 環境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 39 條(集團에너지 供給地域의 指定)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集團에너지 供給計劃을 實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商工部長官・建設部長官 및 環境廳長과 協議하여 集團에너지 供給地域을 指定할 수 있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이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集團에너지 供給地域을 指定할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 40 條(熱供給事業의 許可) ① 加熱하거나 冷却한 물 또는 蒸氣를 配管으로 供給하는 事業으로서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基準이상의 事業(이하 "熱供給事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動力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그 許可받은 事項中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③ 第 20 條 第 21 條 및 第 22 條의 規定은 热供給事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製造業"을 "熱供給事業"으로 "製造業"를 "熱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하고, 第 20 條 第 1 號中 "第 23 條"을 "第 47 條"로 한다.

第 41 條(熱供給施設의 設置등) ① 热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은 자(이하 "熱供給事業者"라 한다)는 動力資源部長官이 정하는 期間내에 热供給施設을 設置하고, 그 事業을 開始하

여야 한다.

③ 動力資源部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热供給區域 또는 热供給施設에 따라 第 1 項의 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④ 热供給事業者는 당해 事業을 開始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項을 動力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 42 條(熱供給義務) ① 热供給事業者는 정당한 理由없이 그 指定供給區域의 需要者에 대한 热供給을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热供給事業者는 그 指定供給區域의 热供給施設을 사용하여 당해 供給區域 이외의 地域에 热供給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43 條(熱供給規定의 認可) ① 热供給事業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热供給區域・熱供給料金 및 기타 热供給條件등에 관한 供給規程을 정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인가받은 事項중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热供給事業者는 第 1 項의 供給規程에 따라 热供給事業을 하여야 한다.

第 44 條(熱供給施設) ① 热供給事業者が 热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이하 "工事"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工業計劃을 作成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热供給事業者が 热供給施設의 工事を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工事의 施工・管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热供給事業者は 热供給施設의 工事を 效率的으로 施工・管理하게 하기 위하여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가진 자 중에서 監督者를 정하여 그 工事を 監督하게 하여야 한다.

④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監督者は 이 法 및

기타의 法令에 適合하게 热供給施設의 工事를 效率的으로 施工・管理하여야 한다.

⑤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热供給施設의 施設基準 및 技術上基準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 6 章 에너지合理化基金

第 48 條(에너지 利用合理化基金의 設置) 에너지 利用合理化事業推進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合理化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 49 條(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石油類의 特別消費稅로부터의 徵收金.
2. 政府 및 政府이외의 出捐金.
3. 借款
4. 基金의 運營으로 생기는 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② 第 1 項第 1 號의 石油類의 種類・徵收比率 및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50 條(基金의 運用・管理) ① 基金은 第 52 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管理公團이 運用・管理한다.

② 에너지management公團은 基金을 運用・管理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動力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그 權限의 一部를 金融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基金을 貸出로 運用하고자 할 때에는 그 基金을 金融機關에 貸與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第 51 条(基金의 사용등)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에너지轉換事業
2. 에너지節約型機資材의 研究・開發 및 生產
3. 에너지節約型 施設 및 機資材의 施工 또 設置.
4. 熱併合發電 및 地域暖房등 集團에너지의 供給施設의 導人과 施工.

5. 代替에너지의 研究・開發 및 代替에너지 利用機器의 生產.

6. 指定에너지 管理對像者の 에너지 利用合理化를 위한 技術開發 및 技術導入

7. 에너지 利用合理化를 위한 技術指導

8. 第 1 號 내지 第 7 號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 利用合理化에 관한 事業.

②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7 章 에너지管理公團

第 52 條(에너지管理公團의 設立등) ① 에너지 利用合理化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에너지management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 政府 또는 政府 이외의 者는 公團의 設立 및 運營에 所要되는 資金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出捐을 할 수 있다.

附 則

第 3 條(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热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許可・承認・指定・檢査 기타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热管理法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热管理診斷機關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이 法에 의한 基準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法 施行當時 종전에 热管理法에 의한 原動機取扱技能士・原動機検査技士 및 原動機施工技能士는 각각 이 法에 의한 해당技能資格者로 본다.

④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热管理法에 의한 原動機取扱技能士는 第 36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热管理士로 본다.

第 4 條(热供給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第 40 條第 1 項의 基準이상의 热供給事業을 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